

임직원 행동강령 (개정 16.07.10)

2016.7.20



목적 및 적용대상

목적

- ✓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

법률적 근거

- ✓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

적용대상

- ✓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(비정규직 포함)



행동강령 개정내용

제8조의 2(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) [본 조 신설 2016.7.10]

-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(퇴직자 포함)와 각 호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
 - 2.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, 단 식사는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 - 3.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 및 여행을 하는 행위
 - 4.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행위
- ② 임직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, 제의 받은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

행동강령 개정내용

제13조(공용재산의 사적사용 · 수익금지)

① 생략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(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,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)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.<신설 2016.7.10>



행동강령 개정내용

제15조(금품 등의 수수 제한)

- ① 생략
- ② 생략
- ③ 생략
- ④ 생략
- ⑤ 금품 등의 수수 등 업무관련 부조리 행위로 제4항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비위발생에 개연성이 높은 직무에 보직할 수 없으며 비사건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에 집합교육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.<신설 2016.7.10>



행동강령 개정내용

제15조의 2(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) [본 조 신설 2016.7.10]

- ① 임직원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, 동호인 활동 등 평가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·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·물품·용역·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

행동강령 개정내용

제33조(교육)

① 생략

② 생략

③ 신규직원 .승진자 .주요부서장 이상 임직원, 청렴업무 또는 공익신고 처리업무 담당자 등에 대하여는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수제도를 수립 .시행하도록 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.<신설 2013.12.19., 개정 2016.7.10>

1. 기관장과 감사부서의 장은 청렴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5시간 이상<신설 2016.7.10>

2. 본부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매년 4시간 이상<신설 2016.7.10>

④ 생략

Q & A

2016.7.20



감사합니다